

『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5년 8월 31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5년 8월 31일

라. 상정일자 : 2015년 9월 9일

제19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유통축산과장 장 상 봉

나. 제안이유

- 시민에게 불편·부담을 주는 자치법규에 대한 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하고, 승마장 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시설내 입장제한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(안 제8조)
 - 제8조의 각 항을 명확하게 수정하고, 포괄적으로 규정한 제4항을 삭제
- 승마장 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 현실화(안 제10조의 별표 1, 제29조의 별표 2)
 - 평일 10,000원 공휴일 15,000원이던 마방 사용료를 40,000원으로 조정

- 1일 기승자 이용료를 청소년 12,000원, 어린이 7,000원에서 청소년과 어린이 모두 15,000원으로 조정
- 자마 회원의 이용료를 월 450,000원에서 500,000원으로 조정
- 자마 미보유 월회원의 이용료를 청소년 200,000원, 어린이 150,000원에서 청소년과 어린이 모두 250,000원으로 조정
- 쿠폰제 회원 이용료를 청소년 100,000원, 어린이 50,000원에서 청소년과 어린이 모두 130,000원으로 조정
-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관련 애매한 조항 삭제(안 제16조)
- 위탁관리 관련 불필요한 조항 삭제(안 제31조)

라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, 제136조, 제139조, 제144조
-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-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
- 기 타 : 해당 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최 명 호

○ 본 조례안은

- 「지방자치법」(15.06.04. 시행)에 따라 규정한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의 입장제한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용료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안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던 입장 제한 및 퇴장에 관한 부분을 명확하게 제시하고, 포괄적으로 규제한 조항을 삭제하였음.
- 승마장 시설과 마방 사용료를 규정해 둔 별표 1과 별표 2를 현실적인 금액으로 수정하였음.

- 안 제16조에서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를 애매하게 규정한 부분 삭제
- 안 제31조에서 위탁관리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

시민에게 불편·부담을 주는 입장 제한 및 사용허가 취소에 관련된 조항을 자체 정비하고, 현실과 맞지 않게 책정된 승마장 시설 이용요금의 현실화를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수정가결